

평창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9. 2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조례 제1803호(2006. 7. 7 공포)에 의거 2006. 10. 7자로 “도암면”을 “대관령면”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,
- “대관령”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,
-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양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“대관령면” 명칭변경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“2007. 9. 1”로 개정함.

3. 참고자료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1
- 나. 관련법령 : 붙임 2
- 다. 입법예고결과 : 제출의견 없음(2006.9.22~9.25)
- 라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마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- 바. 강릉시 협조공문 사본 : 붙임 3

평창군조례 호

평창군 읍·면·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읍·면·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조례 제1803호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부 칙(조례 제1803호)</p> <p>제1조(시행일) <u>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부 칙(조례 제1803호)</p> <p>제1조(시행일) <u>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평창군조례 호

평창군 읍·면·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읍·면·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조례 제1803호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